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690

2022. 3. 22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백선아 의원 등 6명)

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카드납부를 허용하고,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하수도법」 제61조제4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카드납부 허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제1항)

○ 가설건축물 존치기간(1~3년)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하도록 규정함(안 제20조제4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개선

권고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납부의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
○ 또한,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부담금을 감면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・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**『원안가결』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